

의안번호	2201359
의 회 인	권향엽의원
회 답 일	2024. 6. 17.
추계번호	24A0562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(전략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, 철강 등을 포함한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전단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전략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에 철강 분야 등이 추가될 경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재정사업이 확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법 제11조 및 「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108호)에 따르면, 현행 국가첨단전략기술은 4개 분야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)에 17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
 - 개정안은 현행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것임

[표 1] 국가첨단전략기술(법 제11조 관련)

분 야	기술명
반도체 (8개)	○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설계·공정·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
	○ 16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
	○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·공정·소자 기술
	○ 128단 이상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
	○ 픽셀 0.8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·공정·소자 기술
	○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(Display Driver IC) 설계 기술
	○ 14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·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
	○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에 해당하는 FO-WLP, FO-PLP, FO-PoP, SiP 등 공정·조립·검사기술
디스플레이 (4개)	○ AMOLED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3,000ppi 이상의 초소형, 500ppi 이상의 중소형, FHD 이상의 중대형, 4K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) (모듈 공정 기술은 제외)
	○ 반치폭 40nm 이하인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색재현율 REC2020기준 90% 이상, LCD와 모듈기술은 제외)
	○ 크기 30 μ m 이하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초대형 칩크기 30 μ m 이하, 모바일 칩크기 20 μ m 이하, 초소형 칩크기 5 μ m 이하)
	○ 크기 1 μ m 이하의 나노 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·제조·공정·구동 기술 (모듈기술은 제외)
이차전지 (3개)	○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, 공정, 제조 및 평가기술 (에너지밀도가 280Wh/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, 252Wh/kg 이상인 각형 배터리, 280Wh/kg 이상인 지름이 21mm 이하의 원통형 배터리, 260Wh/kg 이상인 지름이 21mm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)
	○ 리튬이차전지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, 제조 및 공정기술 (니켈함량 80% 초과)
	○ 600mAh/g 이상 초고성능 전극(실리콘그래파이트 복합음극, 황 양극, 리튬금속 음극) 또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(전고체전지, 리튬황전지, 리튬금속전지) 설계, 공정, 제조 및 평가기술
바이오 (2개)	○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·정제 기술 (다회용 바이옱터 세포배양: 1만리터 이상)
	○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(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: 100 dose/lot 이상,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: 80% 이상,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: 80% 이상)

자료: 「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」([시행 2023. 6. 2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108호, 2023. 6. 2., 제정]) 별표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 기술에 추가되는 철강 분야의 기술이 특정되어야 하며, 해당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및 현행 재정사업의 확대 계획 등이 확정되어야 함
- 현시점에서 개정안만으로는 위와 같은 계획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개정안의 철강 분야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철강 분야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(내역사업)	회계·기금	2022결산	2023결산	2024예산
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(수소환원제철공정)	에특회계	10,000	10,000	4,000
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(R&D)	일반회계	—	10,290	기후기금 이관(24)
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(R&D)	기후기금	—	—	34,722
전기로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조업 기술개발(R&D)	일반회계	6,000	5,167	2,584
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(R&D)	소특회계	19,591	18,354	12,917
철강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전환 및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(R&D)	기후기금	5,444	7,000	5,178
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(R&D) (內 수소환원제철공정 과제)	에특회계	10,000	10,000	4,000
총 계		51,035	60,811	63,42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.

- 이에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nabo.go.kr